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8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서하윤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34,222,7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4,222,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채권자,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5. 5. 1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7674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까지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소기간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7674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 원고 승소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4. 27.부터 5년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2020.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무렵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 채권자인 원고가 D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것이 원고 등 D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는데, 그 액수는 2020. 4. 27. 현재 원금 20,689,520원 및 지연손해금 13,533,213원 등 합계액 34,222,733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D의 재산상황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적극재산		
	재산	가액(원)	증거
1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	900,000,000	갑제10호증의1
2	인천 G	10,509,600	갑제10호증의2
3	인천 강화군 H 임야 및 I 도로 중 1/3 지분	85,000,000	갑제9호증의3,4
4	이 사건 각 부동산	360,000,000	갑제6호증
	합계액	1,355,509,600	
순번	소극재산		
1	J은행의 채권	446,173,176	갑제11호증
2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500,210,319	갑제11호증
3	J은행의 채권	100,000,000	갑제9호증의1
4	K 주식회사의 채권	10,447,047	갑제9호증의1
5	주식회사 L의 채권	32,462,078	갑제9호증의1
6	원고의 채권(원금)	20,689,520	갑제1호증
	합계액	1,109,982,140	

위 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소극재산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담보의 부족상황이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에 대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선의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피고 및 D의 모친인 M의 소유였는데, 장남인 D이 임의로 2010. 4. 29.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D으로부터 2억 3,4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D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D의 친동생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당시 시세보다 낮게 정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D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소의 방법 및 범위

1)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5.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장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재산적 가치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데, 위 표에 기재된 바와 의하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보다 적은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222,73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4,222,7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4,222,7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 443 평방미터
2. 대 357 평방미터
3. 위 양지상
 석조스라브층 2계건 주택
 건평 40평 1층 2작
 외2계평 22평 3층 3작
 부속건물
 연와조 세면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 9층 8작
4.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 516 평방미터

